

청주지방법원 2024. 10. 25 선고 2024가단69022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성욱

피 고 1. B

2. C

변 론 종 결 2024. 10. 11.

판 결 선 고 2024. 10. 25.

주 문

-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주식회사 D에게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주식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E에게 주식양도를 한 사실’의 통지를 하라.”는 청구 부분의 소를 각하한다.
- 피고 B은 원고에게 30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19.부터 2024. 9. 20.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주식에 관하여
가. E와 피고 C이 2021. 3. 3. 체결한 주식양도양수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C은 E에게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양도의 의사표시를 하라.
- E와 피고 C이 2021. 3. 3.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채권에 관하여 체결한 채권양도양수계약을 40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 피고 C은 원고에게 4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6.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7.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 및 피고 C은 주식회사 D에게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주식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E에게 주식양도를 한 사실’의 통지를 하라.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피고 B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 피고 C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자백간주)

3. 소 각하 부분

원고는 피고 C과 E 사이의 2021. 3. 3.자 주식양도양수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고(①), 그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 C에 대하여 E에게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양도의 의사표시1)를 할 것(②)과 주식회사 D에게 그 주식양도 사실의 통지를 할 것(③)을 구하고 있다.

위 각 청구 중 ①의 사해행위취소 청구, ②의 원상회복 청구는 인용된다.

그런데 이 판결이 확정되어 사해행위의 취소(①) 효력이 발생하고 그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②)이

이루어져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주식이 E에게 복귀되면, E는 그 주식이 자신에게 귀속되었음을 증명하여 피고 C의 협조 없이 단독으로 주식회사 D에 대하여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고, E가 명의개서를 청구하지 않으면 E의 채권자인 원고가 E의 주식회사 D에 대한 명의개서청구권을 대위행사하여, E에게로 명의개서를 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즉, 원고가 C을 상대로 굳이 위 ③과 같은 청구를 해야 할 소의 이익이 없다.2) 따라서 위 ③의 청구 부분에 관한 소는 부적법하다.

판사 김현룡

별지

1) 이에 관하여 하급심 판결례는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양도의 의사표시를 하라’고 판결한 사례, ‘주식양도양수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고 판결한 사례 등이 있는데, 사해행위 취소 청구 인용판결은 채권자와 수익자 사이에서 상대적 효력만 발생하므로 채무자에게 이를 복귀시키는 원상회복의 행위가 필요하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청구취지 대로 전자의 주문으로 판결한다.

2) 또한, 설령 위 ③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확정되어 주식회사 D에게 그 통지가 이루어지더라도, 주식회사 D이 명의개서를 하지 않으면 결국 주식회사 D을 상대로 명의개서 절차 이행을 청구해야 한다.